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목적과 역할

1. 일본의 복지용구 시책에 대한 역사

1 2차대전 후(1945년)~1988년

일본의 복지용구 시책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상이군인의 복지용구에 관한 시책은 전후(1945) 시기부터 실시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시책으로 본다면 1950년에 신체장애자 복지법이 시행되어 중증 신체장애자의 신체기능을 지원 또는 보조할 목적으로 '보조기(보장구, *orthosis*)'를 급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최초의 확립된 시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재택복지(재가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1969년부터는 개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컫는 '요원호 고령자'와 홀로 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등」을 비롯하여 「중증 신체장애자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중증 장애아동 및 장애인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등이 실시되면서 특수침대나 이동식 리프트 같은 일상생활 용구를 급부하거나 대여해 줄 수 있게 되었다.

1981년에는 국제장애인의 해를 맞아 「완전참가와 평등」이라는 모토가 확산되면서 의학부문을 비롯하여 재활의학부문에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격리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 이념이 침투되기 시작했다. 휠체어 경사로나 복지용구에 대한 니즈도 높아졌고, 기술혁신에 따라 복지용구 등이 개발되면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구축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79년에 일본국립신체장애자재활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 시기를 전후로 재활센터 및 복지기기센터 등을 설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로써 복지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보급촉진을 위한 대응노력이 공공부문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현재는 일반사단법인)와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현재는 공익재단법인)가 설립되었으며,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실버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흥을 포함하여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역자 주

개호: 간병보다 좁은 개념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노인요양

2 1989년~2000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호(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고령자 및 장애자가 자신의 지역이나 가정에서 가능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른 고령자 시책으로는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골드플랜)」 등의 제반 시책을 전개하고, 장애자 시책도 1993년 3월에 「장애자 대책에 관한 신장기계획」을 책정함으로써 고령자 및 장애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진입을 한층 촉구하기 위하여, 1990년에는 「민간사업자의 개호용품 및 개호기기 임대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후 1994년에 「민간사업자의 복지용구 임대서비스 및 복지용구 판매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로 개정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에 수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에서 「복지기기 및 개호용품 렌탈서비스 실버마크제도」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복지용구에 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993년 10월 1일부터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복지용구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일본의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뛰어난 수준의 복지용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확고한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체, 사업자(제조, 판매 또는 임대사업자), 노인복지시설/신체장애자갱생시설의 개설자 등, 각각에 대한 책무가 책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가 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중심 단체가 되어, 구체적인 복지용구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게 된다.

또한 복지용구법을 시행하는 동시에, 1993년부터는 사회보험청(현재는 일본연금기구)에서 건강보험 재택개호 지원사업(정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의거한 복지용구 렌탈료 지원 등을 개시하여 복지용구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전개해 나간다.(이 사업은 이후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 후에도 1994년에는 「신-골드플랜」, 1995년에는 「장애자 플랜」이 책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일본통상산업성(현재 경제산업성)에 「복지용구산업간담회」를 설치하여 제1차 중간보고를 받았다(이후 제2차중간보고, 제3차중간보고를 거쳐 1999년에 「복지용구산업 간담회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한편 업계단체들도 조직화되기 시작하는데 1990년에는 공급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전국복지기기·개호용품 렌탈사업협의회가 설립되었고, 1993년에는 일본

전국개호용품 판매점협회가 설립되었는데, 1994년에 이 두 단체가 일본복지용구 공급사업자협회로 통합되었다. 그 후 동 협회는 사단법인 일본복지용구공급협회로 발전해 나간다. 1996년에는 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일본건강복지용구공업회, 일본전국복지용구제조사업자협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 후, 두 단체는 발전적인 통합을 거쳐 2003년에 일본복지용구·생활지원용구협회가 되었다.

3 개호보험제도(장기요양법) 시행

(1) 2000년 제도 시행~2005년 제도 개정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복지용구 부문에서는 거택^{居宅}요양서비스[※]에 복지용구 대여서비스가 포함되었고, 거택개호복지용구에 대한 구입비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제조부터 공급까지 전체 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이 증가되었다.

또한 해당 업계에서는 복지용구를 한층 더 보급시켜 나갈 목적으로, 2002년도에 복지용구 관련 6개 단체(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일본전국복지용구제조사업자협회, 일본건강복지용구공업회,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사단법인 일본복지용구공급협회)가 복지용구법의 시행 첫날인 10월 1일을 「복지용구의 날」로 정하고, 보급 계발을 한층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개호보험법은 해당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률 시행 후 5년간의 실적을 감안하여, 개호보험의 철저한 기본이념인 「자립지원」을 추구해 나간다는 관점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예방적인 차원의 급부 대상자 범위, 서비스 내용, 요양관리 등을 재평가하였다. 그리고 「신-예방급부」를 마련하여 「개호예방복지용구급부」와 「특정개호예방복지용구판매」서비스를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서비스 수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부정(不正)사업자 방지 대책으로는 결격사유 지정, 취소요건 추가 지정, 갱신제도(6년마다) 도입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 지정 시에 사후규제 규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없었던 복지용구 판매자에 대한 사업소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다.

신-예방급부제도를 수립함에 따라 적정한 급부 실시(폐용증후군 억제)라는 관점에서 '요지원^{※※}' 1·2등급 및 '요개호' 1등급에 해당되는 자를 특수침대, 휠체어 등의 급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행을 앞두고 2006년 9월말까지 경과조치를 실시하였지만, 일본 각지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이듬해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급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역자 주

제가요양서비스, 거택에는 자택 외에 노인홈 등도 포함된다.

※※역자 주

요개호(要介護, 개호 필요), 요지원(要支援, 지원 필요): 개호보험의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요개호 인정(5단계 등급)' 또는 '요지원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용구급부와 특정복지용구판매에 대한 내용을 거택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였다. 「지정 거택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제37호)에 따르면, 개호지원 전문가는 복지용구 급부를 거택서비스계획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당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복지용구 급부가 필요한 이유를 해당 계획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6개월에 1회」 서비스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용구 급부가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이유를 거택서비스계획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호지원 전문가는 특정복지용구판매를 거택서비스계획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당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정복지용구판매가 필요한 이유를 해당 계획에 기재하도록 하여(지정-개호예방서비스의 경우에도 동일함) 급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호서비스사업에 소요되는 사무부담을 줄이고 일정하게 재평가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에서 서술한 복지용구급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담당자회의 개최는 「최소한 6개월에 1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로 변경하였다.

이후 개호보수(개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소 및 시설이 대가로서 받는 보수)를 개정함에 따라 2006년 1월 16일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답신한 내용을 보면 「동일한 복지용구에 대한 가격 차이 실태 등을 조사 및 연구하여 보수방식을 신속히 검토한 후, 복지용구에 대한 대여 가격 적정화를 꾀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서 2005년도의 개호보험법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개호서비스 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사업소별로 일정한 「개호서비스 정보(기본정보+조사정보)」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면, 도도부현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여기서 조사정보란 1명 이상의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보고 내용대로 실시되는지에 대한 확인완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연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호보험제도 정책 하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개호서비스 사업소에 대한 정보를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의 상황이나 가치관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내용이나 운영상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기반의 역할을 한다. 이용자 선택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사업자간 경쟁에 따라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 자체는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원은 단순히 보고된 정보의 사실여부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및 지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3자 평가 및 지도감사(監査)시스템과는 역할이 다르므로,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시도방법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었다.

(2) 2006년 이후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2006년도의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부비 분과회에서 답신한 내용을 보면, 향후 계속 검토해 나가겠지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4가지 부대사항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동일한 복지용구에 대한 가격 차이 실태 등을 조사 및 연구하여 보수방식을 신속히 검토한 후, 복지용구에 대한 대여 가격 적정화를 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내에 「개호보험제도 복지용구 보험급부 방식에 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다. 2009년 9월 3일, 제1회를 개최하여 이후 6회에 걸쳐 검토 작업을 실시한 후, 2011년 5월 19일에 「복지용구 보험급부 방식에 관한 검토회 논의 정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개호보수를 개정하고 동시에 개호서비스사업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복지용구 관련 서비스는, 개인 이용자의 전체적인 상태나 생활환경에 맞는 복지용구 선정 그리고 개호지원전문가 등의 전문가와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이용자별 「복지용구 서비스 계획」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4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제정과 시행

2005년에 개정된 개호보험법 부칙 제2조에는 「정부는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 및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재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09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1997년부터 실시한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03년에 지원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5년 10월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조치제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간 직접계약에 의거한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는 커다란 개혁이었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관련 보조기(보장구, orthosis) 및 복지용구 급부에 대한 내용도 개정되었다. 당시까지는 급부를 실시하는 종목이 고정되어 있어 과학기술 발달 및 장애인 니즈에 따라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보조기는 ① 신체결손 또는 상실한 신체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개별 장애에 따라 설계 및 가공된 것, ② 신체에 장착하여 일상생활 또는 취학/근로에 이용하는 것으로, 동일

* 조치제도: 복지서비스의 해당 요건 판단, 서비스 개시 및 폐지를 법령에 의거한 행정권한 상의 조치에 따라서 제공받는 제도. 이에 반하여 계약제도는 이용자가 복지서비스 제공자(사업자)와의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조치제도 하에서는 이용자 측의 의향이 존중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 ③ 급부 시에 전문가 의견(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을 첨부할 것, 이라고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 발달 및 이용자 니즈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보조기를 급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용자와 보조기 사업자의 의견 등을 집약 및 검토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용구에 대한 기존 급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 설립된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바꾸어 법정화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응익부담(정률부담)으로 되어 때문에,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서비스부담 비용(10%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일부 장애인들은 「일본국 헌법 제25조로 보장된 생존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며, 일본 전국에 있는 지방재판소에서 집단소송을 벌이기도 하였다. 만일에 서비스부담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시정촌(행정단위)에 생활보호신청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인 자립」이라고 하는 법률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후의 총선거에서 장애인자립지원법 폐지를 정책공약(매니페스토)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어, 장애인자립지원법 위헌소송에 대하여 2010년 1월 7일, 원고단·변호단과 후생노동성이 기본합의문서를 교환하였다. 이 합의문서에는 「국가(후생노동성)는 신속하게 응익부담(정률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늦어도 2013년 8월까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종합복지법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장애복지시책의 기본은 헌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자의 기본적인 인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후 4월 23일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개호보험제도에 속한 복지용구 전문상담원과는 별도 체계의 제도 이기는 하지만, 개호보험제도의 개정 및 장애인복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이러한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복지용구 관련 전문직 육성 정책

현재까지 복지용구에 관한 전문직 양성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의지(義肢, 의수족) 보조기 및 보청기에 한해서만 제도화되어 있다. 1987년에 의지장구사법, 임상공학기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듬해부터는 국가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때 보류되었던 보청기사법(가청)은 1990년부터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가 보청기 기능자 강습회를 열어 인정-보청기기능자시험, 인정-보청기전문점 등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는 1990년에 「복지기기·개호용품 렌탈서비스 실버마크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고령자의 복지용구 선정에 대한 상담 및 적합여부확인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선정상담자」 연수를 시작해서 사업자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며 자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이후 1997년부터는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에서 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플래너」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재활영역의 전문직에 해당되는 물리치료사 및 작업요법사, 그리고 간호, 개호영역의 전문직인 간호사, 개호복지사 등의 양성커리큘럼에 복지용구에 관한 학습시간 수를 늘려 나가는 경향이다. 게다가 도쿄상공회의소의 검정제도로 시작된 「복지주거환경 코디네이터」와 같이, 최근에는 고령자 및 장애자의 복지용구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거주 환경을 정비(예, 주택리모델링 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나가고 있다.

3 개호보험제도/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목적과 역할

1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위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용구나 주택리모델링 등은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개호보험제도 급부 서비스에도 편입되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복지용구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측면에서, 복지용구가 필요한 고령자 등에게 복지용구 선정에 대한 도움, 적합상황 확인, 사후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효과 평가까지 실시하는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이라는 전문직은 개호보험제도 내에 편입되어 있다.

개호보험제도 중에 「지정-거택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7호) 및 「지정-개호예방서비스 사업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 그리고 지정-개호예방서비스 관련 개호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법에 관한 기준」(2006년 3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35호)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의 기본원칙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며 시정촌, 그 외 거택서비스사업자(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자와 연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가능한 자기 집에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심신 상황, 희망 및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용구선정에 대한 적절한 도움, 용구설치, 조정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생활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

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사업소는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을 상근직원 환산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 서비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역할

개호보험제도에서 요구하는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역할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의 심신상태, 희망 및 처한 환경 등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복지용구 선정 및 사용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할 것.
- ② 이용자에게 팜플렛이나 카탈로그 등의 문서를 제공하고 복지용구의 기능, 사용방법, 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여 개별적인 복지용구에 대한 대여 및 판매에 관련된 계약에 동의를 구할 것.
- ③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것.
- ④ 이용자 신체 상황 등에 맞춰 복지용구를 조정할 것.
- ⑤ 이용자에게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방법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다음,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해당 복지용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용방법을 지도할 것.
- ⑥ 이용자 등이 요청할 경우 복지용구의 사용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방법 지도 및 복지용구의 수리 등을 실시할 것.

또한 2005년에 개정된 개호보험법에 따르면,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호지원 전문가(케어 매니저)가 서비스담당자회의 결과를 토대로 케어플랜 및 서비스이용료에 복지용구를 도입하는 이유를 명기하고 도입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그리고 앞서서도 서술하였지만 2012년 4월 1일부터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이용자별 「복지용구 서비스계획」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지정-거택서비스 사업 등의 실시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99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7호)」의 「지정-복지용구대여」 및 「지정-특정복지용구판매」에서, 복지용구 서비스계획 작성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복지용구 서비스계획 작성에 관한 규정 개요]

-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이용자의 심신 상태, 희망 및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지정-복지용구의 대여/판매 목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기재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거택서비스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 계획 작성 시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 계획 작성 시에, 해당 복지용구의 대여 및 판매 계획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복지용구 대여계획을 작성한 후에, 해당 복지용구 대여계획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복지용구 대여계획을 변경한다.

3 향후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방향성

고령화 사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거택복지(재가복지)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젊은 시절에 구입하여 오랜 세월 거주해 온 자신의 주택과 거주환경이 자신의 심신 상태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증가될 것이다. 하지만 정들고 익숙한 자기 집을 놔두고 시설에 들어갈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심신 기능을 보완하고 가능한 자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가족 등의 개호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리모델링 서비스나 복지용구 활용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예컨대 주택리모델링 공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복지용구를 활용하여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용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택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방문개호서비스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이나 복지용구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훨씬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택리모델링은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복지용구만 해도 대여(렌탈)할 경우에는 교환도 가능하지만,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뛰어난 복지용구를 구입해도 이용자의 편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 상태에 적합한 적절한 주택리모델링 및 복지용구 선정 그리고 적합성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고령자의 거주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용구 및 주택리모델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